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지침에 대한 토론

박 창 언 부산대학교 교수

초·중등학교에 대한 개정 교육과정의 발표 내용은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과 지향점, 주요 개념 및 문서체제의 변화, 그리고 변화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여 관련 당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의 조문과 더불어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이다. 토론은 주요 내용의 세부적 사항보다는 법적 근거와 체제 등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룬다.

첫째,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어 형식상 행정규칙에 속하지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규의 성격을 지니는 법규명령<sup>1)</sup>으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교육과정의 문서가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육에 대한 지도·조언적 성격을 지니는 것도 많이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2에 시행근거, 학생참여형 수업의 운영, 형성평가와 수행평가의 실시, 체험활동이 가능한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사항의 구체화나 시행을 위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이나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자유학기에 학교스포츠클럽의 운영에 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총론의 지침에는 시행령 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운영의 골격을 제시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문서를 제시하는 방식과 같이 자유학기의 성격이나 목표, 주요 내용의 예시 등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범교과 학습 주제는 아동복지법 등에서 교육내용과 방법, 시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들보다 하위법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수 없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범 교과 학습 주제의 주요 내용은 문구상 지도와 조언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상위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현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예시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예시 없이 한 줄의 문구로만 제시할 것인지 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고등학교 교육목적은 중학교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과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행하도록 하는 이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등교육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일반교육이며, 전문교육은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등

---

1) 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된 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서 행정과 사법의 기준이 된다. 이에 비해 행정규칙은 행정내부관계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 법규처럼 일반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에 맞추어 목적과 내용을 특수화시킨 교육으로 직업교육과 직결된 것이다. 고등학교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이러한 목적과 관계에서 학교 유형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년군제를 지속한다고 하면, 현재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 단위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다섯째, 2015년 3월에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이 새로이 정비되었다.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순차적인 법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적용되는 교육과정 문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까지 마련되었던 시기의 체제이다. 올해 새로이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담아야 할 내용과 하위법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육과정 문서 체제나 내용이 교육현장의 지도와 안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검토가 요구된다.